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보증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보증수혜기업 확대 및 우리구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효과를 높이고,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를 위한 특별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와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및 구청장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또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내용에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위원중 일부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위원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위원의 임기 조문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함(안 제6조제1항 내지 동조제6항).
- 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용자대상 내용을 동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7조제1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제도 도입 배경

먼저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2003년도 감사원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실시(2003.2.10~3.15)한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사항 조치(2003.9.1 산업 16310-1427) 내용중 자치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여유자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중소기업특별보증제도를 활용하도록 처분요구된 사항으로서, 서울시에서 설립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제도는 자치구의 출연금과 연계하여 재단의 보증능력 확충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치구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의 부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시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일정액을 출연하는 특별보증제도를 추진하여 생계형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에 그 출연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은 동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2. 출연근거 관련법령 검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 설치 또는 동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일정액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동 개정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안 제4조제1항제3호)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의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먼저 그 재원을 보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이 편성되었고, 또한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출연금 비목으로 1억이 계상되어 동 재원으로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004년말까지 자치구별 출연 최소권고액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보증실적기준 권고액 2억 53백만원과 사업체수기준 권고액 2억 76백만원을 합하여 최소권고액은 5억 29백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2004. 3. 10일 현재 자치구별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현황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개구중 2개구는 동 재단에 기출연하였고, 우리구를 포함한 9개구는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개정 완료후 협약체결 절차를 거쳐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출연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구의 재정형편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1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 재단의 최소권고액에 따라 향후 추가 출연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안 제6조제1항제3호)

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자치구 출연금의 5배수 범위내에서 “특별보증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에 맞게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① 우리구에서 1억원을 출연하여 특별보증지원금액 중 5천만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보증 총한도는 4억원이 되는 것이며,

※ <산 식> 5억원(1억원×5배) - 1억원(5천만원×2배) = 4억원

또한 ② 위 ①의 특별보증 총한도내에서 3억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업체 중에서 1억원을 정상 상환한 경우에 특별보증지원 추천 가능액은 2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 <산 식> 4억원(한도) - 3억원(기 지원액) + 1억원(상환분) = 2억원

셋째, 기금운용위원회 조문 일괄정비(안 제6조제2항, 동조제5항 및 제6항) 먼저 법문의 간결성은 조문의 표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짜임새도 간결하게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입법기술상의 표현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법령입안 및 자치법규입법에도 기준이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2항의 현행 및 개정안 조문을 보면, 법령상 용어 표기방법에 잘못된 부분 즉, 위원등 사람수의 상한을 표시할 경우에 「○인이상」이라는 말이 없이 상한만 표시할 때에는 「○인 이내」로 표기해야 맞는데 “10인이하”로 잘못 표기되어 있고, 또한 조문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동 조문을 별도 “항”과 “호”로 나누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동조제5항 및 제6항은 신설된 내용으로서 “항”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조문내용을 알기 쉽고, 찾기 편리하도록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제6조의2(임기) 및 제6조의3(실비보상)”으로 조의 제목을 표시하는 것이 법령입안심사기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div style="text-align: center;"><신설></div> 3. (생략)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u> 4.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구금고 소관지점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된다.</p>	<p>②----- ----- ----- ----- -- 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구금고 소관지점장,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 2인이 ---.</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2. 서울특별시중로구의 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 3. 구금고 소관지점장 4. 중소기업의 대표 2인</p>
<p>③(생략) ④(생략)</p>	<p>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p>	<p>④(개정안과 같음) ⑤(개정안과 같음)</p>
<p><신설></p>	<p>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6조의2(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신설></p>	<p>⑥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의3(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셋째, 기금운용위원회 조문 일괄정비(안 제6조제2항, 동조제5항 및 제6항) 먼저 법문의 간결성은 조문의 표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짜임새도 간결하게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입법기술상의 표현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법령입안 및 자치법규입법에도 기준이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2항의 현행 및 개정안 조문을 보면, 법령상 용어 표기방법에 잘못된 부분 즉, 위원등 사람수의 상한을 표시할 경우에 「○인이상」이라는 말이 없이 상한만 표시할 때에는 「○인이내」로 표기해야 맞는데 “10인이하”로 잘못 표기되어 있고, 또한 조문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동 조문을 별도 “항”과 “호”로 나누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동조제5항 및 제6항은 신설된 내용으로서 “항”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조문내용을 알기 쉽고, 찾기 편리하도록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제6조의2(임기) 및 제6조의3(실비보상)”으로 조의 제목을 표시하는 것이 법령입안심사기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u><신설></u> 3. (생략)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특별신용보증 추천대 상자 선정</u> 4.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 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 장, 위원은 지역경제과 장, 기획예산과장, 사회 복지과장, 재무과장, 환 경위생과장, 구금고 소 관지점 및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된다.</p> <p>③(생략) ④(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 ----- ----- ----- -- 지역경제과장, 기획 예산과장, 재무과장, 환경 위생과장, 구금고 소관지 점장, 구의회에서 추천하 는 구의원 1인, 및 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위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 2인이 ---.</p> <p>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한 10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 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경제과장, 기획 예산과장,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 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 3. 구금고 소관지점장 4. 중소기업의 대표 2인 <p>④(개정안과 같음) ⑤(개정안과 같음)</p> <p>제6조의2(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6조의3(실비보상) 위원 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IV.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의 출연금

②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

(별표 1)

2004년말까지 자치구별 출연 최소권고액

(단위 : 개, 백만원)

자치구명	최소권고액 (A+B)	보증실적 기준		사업체수 기준	
		금 액	권고액(A)	사업체수	권고액(B)
합 계	10,000	418,804	5,000	719,536	5,000
종로구	529	21,226	253	39,654	276
중구	810	29,156	348	66,465	462
용산구	252	8,364	100	21,928	152
성동구	352	15,413	184	24,185	168
광진구	377	17,992	215	23,270	162
동대문구	428	16,542	197	33,224	231
중랑구	346	13,638	163	26,369	183
성북구	259	7,679	92	24,078	167
강북구	194	5,906	70	17,805	124
도봉구	165	4,768	57	15,586	108
노원구	249	7,773	93	22,514	156
은평구	243	7,436	89	22,179	154
서대문구	220	6,523	78	20,390	142
마포구	311	12,186	145	23,786	166
양천구	301	11,566	138	23,375	163
강서구	327	11,529	138	27,222	189
구로구	438	19,986	239	28,675	199
금천구	298	14,319	171	18,279	127
영등포구	487	17,041	203	40,843	284
동작구	230	7,668	92	19,916	138
관악구	320	11,584	138	26,213	182
서초구	752	42,300	505	35,580	247
강남구	1,171	68,017	812	51,649	359
송파구	613	29,004	346	38,406	267
강동구	328	11,188	134	27,946	194

(별표 2)

자치구별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운용 현황

2004. 3. 10 현재

자치구명	조례개정 내용	개정일	출연금
종로구	조례개정 추진중	2004.3월예정	1억
중구	.	.	.
용산구	조례개정 추진중	2004년 예정	1억
성동구	기존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있음	2004. 2월	1억
광진구	조례개정 추진중	2004년 예정	2억
동대문구	조례개정 추진중	2004. 하반기	2억
중랑구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2003년 2004년	1억 1억
성북구	.	.	.
강북구	.	.	.
도봉구	.	.	.
노원구	.	.	.
은평구	.	.	.
서대문구	.	.	.
마포구	.	.	.
양천구	조례개정 추진중	2004년 예정	1억
강서구	.	.	.
구로구	일반예산으로 출연	2003년 2004년	1억 2억
금천구	.	.	.
영등포구	조례개정 추진중	2004년 예정	1억
동작구	.	.	.
관악구	.	.	.
서초구	.	.	.
강남구	.	.	.
송파구	조례개정 추진중	2004년 예정	2억
강동구	조례개정 추진중	2004년 예정	1억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관리 현황

2003. 12. 31 현재

구 분	서울특별시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 : 연 4% - 상환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기금담당공무원	행정 7급 심 상 용
통장잔액의 예금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 1년 만기형 - 4.10% (7구좌) ----- 551,646,698원 <li style="text-align: right;">총 계 : 551,646,698원
대출금 또는 집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03. 12.31. 현재 대출금 총 계 : 2,158,125,000원 ② 2003. 1. 1 ~ 12. 31. 현재 대출액 : 1,275,000,000원
대출금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1. 1 ~ 12. 31. 현재 대출금 상환금 : 998,125,000원
이자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1. 1 ~ 12. 31. 현재 이자수입 : 99,478,961원

※ 2003. 12. 31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 : 2,709,771,698원